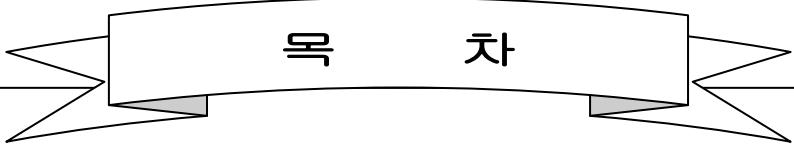


KB 단기 국공채형 신탁 상품설명서

(2003. 11. . 현재)

-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상품은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의 배당이 달라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목 차

I. 약관의 주요내용

II. 상품의 개요

III. 신탁재산의 운용

IV. 상품의 투자위험

V. 신탁재산의 평가 및 공시방법

VI. 신탁재산 운용업무의 재위탁에 관한 내용

VII. 기타 고객과 관련된 중요 사항

이 상품설명서는『KB 단기 국공채 형신탁』을 가입하고자 하시는 고객에게 상품의 주요내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며, 이 상품의 내용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을 수령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 약관의 주요 내용

편 드 명	KB단기 국공채형 신탁	
신 탁 기 간	매 신탁건별로 수탁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신 탁 방 법	개별 신탁건별로 자유롭게 입금하고 해지하는 방법	
이 익 계 산	매 신탁건별로 해지일에 이익계산	
가 입 대 상	제한없음	
가 입 금 액	신탁건별 100만원 이상	
신탁금의 지급	적용기준가격	해지신청일로부터 제3영업일
	지급일	해지신청일로부터 제3영업일
	해지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월 미만 : 신탁이익의 70% · 3개월 이상 6개월미만 : 신탁이익의 30% <p>※ 입금건별로 이익계산기간중 신탁이익 범위내에서 상기 해지수수료를 징수하여 신탁재산에 편입</p>
	일부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입선출에 의해 지급 · 일부지급후 신탁잔액이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탁금 전액을 해지신청하여야 함
신 탁 보 수	신탁재산 순자산총액 평균잔액의 연0.5%	
기 준 가 격	그 직전일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수익권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매일 계산하여 영업점에 비치합니다.	
양도 및 담보제공	은행의 승낙을 얻어 가능	
신탁자산의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 채권관련 파생상품, 대출, 유동성자산 및 기타자산 : 10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채 등에 60% 이상 - 대출 50% 이내 · 채권관련파생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물거래 : 20% 이내, 옵션거래 : 5% 이내 	
원본 및 이익보전	원본 및 이익보전은 하지 않습니다.	
신탁금의 시효	신탁금에 대한 수익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약관의 변경	은행은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운용의 재위탁	운용업무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거나 제3자에게 신탁재산 운용을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은행이 부담합니다.	

II. 상품의 개요

■ 상품의 정의

KB단기 국공채형 신탁이란 불특정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수탁받은 신탁자금으로 펀드를 설정하여 유가증권 등에 운용하고 수익자에게 실적배당하는 신탁상품으로 당해 펀드에 추가신탁 및 중도해지가 가능한 합동운용 불특정금전신탁을 말합니다.

■ 가입대상

- 위탁자 : 제한없음
- 수익자 : 위탁자 본인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

■ 신탁기간

매 신탁건별로 수탁일로부터 해지일까지(만기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음)

■ 신탁금액

신탁건별 100만원 이상

■ 신탁보수

신탁재산 순자산총액 평균잔액의 연 0.5%

■ 신탁금의 지급

- (1)이 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지신청의 취소는 해지신청 당일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단, 해지신청금액은 최저 1만원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2)해지시 적용기준가격 : 해지신청일 포함 제3영업일
- (3)실수령일 : 해지신청일 포함 제3영업일
- (4)해지신탁금은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이체 합니다.
- (5)이 신탁의 신탁금을 일부해지하는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에 의해 지급하며, 신탁잔액이 100만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탁금 전액을 해지신청 하여야 합니다.

■ 해지수수료

입금건별 이익계산기간중 신탁이익 범위내에서 다음의 해지수수료를 징수하여 신탁재산에 편입합니다.

- 3개월 미만 : 신탁이익의 70%
- 3개월 이상 6개월미만 : 신탁이익의 30%

■ 신탁방법

개별 신탁건별로 자유롭게 입금하고 해지하는 방법

■ 이익계산

매 신탁건별로 해지일에 기준가격방식에 의한 실적배당

■ 원본 및 이익의 보전 : 없음

■ 양도 및 담보제공 : 가능(단, 은행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 기준가격의 계산

(1) 당일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자산총액(이하 “신탁재산”이라 함)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수익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2) 이 신탁의 수익권 좌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frac{\text{신탁금액}}{\text{수탁일의 기준가격}} \times 1,000$$

(3) 이 신탁의 최초 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합니다.

(4) 은행은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하여 영업점에 비치하고 고객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III. 신탁재산의 운용

■ 신탁재산의 운용대상

운용대상	운용비율	비 고
① 채권, 채권관련 파생상품, 대출, 유동성 자산 및 기타 자산	신탁재산의 100%이내	
② 국공채 등 - 국채, 공채 - 법인세법 시행령 제 17 조 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호, 제 61 조 제 2 항 제 1 호 내지 제 7 호, 제 12 호, 제 18 호 및 제 19 호의 기관이 발행하거나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	신탁재산의 60%이상	
③ 대출	신탁재산의 50%이내	

④ 채권 관련 파생상품에의 운용은 미결제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합니다.

가. 선물거래 : 신탁재산의 20%이내

나. 옵션거래 : 신탁재산의 5%이내

※관련자산의 가격변동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헛지목적의 파생상품에의 운용은 ① 내지 ④의 운용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① 내지 ④및 다음의 “신탁재산의 운용제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이 신탁의 판매개시일로부터 1

개월, 펀드해지 이전1개월, 신탁의 대규모 해지 등으로 인하여 신탁금액이 감소하거나 순자산가

치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운용비율이 초과된 때로부터 1개월간은 신탁재산의 운용비율에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 신탁재산의 운용제한 사항

신탁회사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의 제한을 받습니다. 다만,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합니다.

(1) 동일한 법인(정부투자기관,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및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제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약관 제18조제3항, 제5항 및 제8항제2호내지제3호의 운용자산. 단, 은행이 발행한 신탁수익권증서 및 예.적금증서 담보대출, 약관 제18조제3항제5호에서 정한 보증서담보대출 제외)는 이 신탁재산의 10% 이내

(2) 동일한 계열기업군(은행감독규정 제79조에 정한 주채무계열)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약관 제18조제3항, 제5항 및 제8항제2호 내지 제3호의 운용자산. 단, 은행이 발행한 신탁수익권증서 및 예.적금증서담보대출, 약관 제18조제3항제5호에 정한 보증서 담보대출 제외)는 이 신탁재산의 25%이내

(3) 은행의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약관 제18조제3항, 제5항 및 제8항제2호 내지 제3호의 운용자산. 단, 은행이 발행한 신탁수익권증서 및 예.적금증서담보대출, 약관 제18조제3항제5호에 정한 보증서 담보대출 제외)는 이 신탁재산의 5% 이내

(4)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에의 운용은 이 신탁재산의 5% 이내

(5) 유가증권의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은 운용할 수 없다.

(6) 이 신탁의 신탁금액이 500억원 미만일 때는 상기(1)내지 (2)의 신용공여한도 제한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법인 및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50억원까지로 할 수

있습니다.

IV. 상품의 투자위험

■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의 위험

신탁상품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은행은 투자손실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대출의 위험

대출을 받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투자자금의 회수불능 및 회수기간이 지연될 수 있는 위험입니다.

■ 채권투자의 위험

채권은 주식에 비해 그 위험도가 낮지만 채권 발행자의 채무불이행 위험과 이자를 변동에 따른 위험이 있습니다.

■ 유동성의 위험

투자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 하락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 파생상품의 투자 위험

선물 및 옵션거래는 적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하다는 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의 직접투자보다 위험이 클 수 있습니다. 다만, 동 상품은 펀드 보유채권의 가격변동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헛지거래 위주로 운용됩니다.

V. 신탁재산의 평가 및 공시방법

■ 자산의 평가

(1) 신탁재산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가. 채권

- ① 채권은 평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계속 3월간 매월 10일 이상 거래소에서 시세(기세 포함)가 형성된 채권은 평가일의 최종시가
- ② ‘①’에 해당되는 상장채권 중 평가일에 시세가 형성되지 아니한 채권과 ‘①’에 해당되지 아니한 상장채권은 ‘③’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
- ③ 비상장채권은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제6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2개 이상의 채권가격 평가 기관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하여 평가한 금액
- ④ ‘①’ 내지 ‘③’의 기준으로 시가산출이 불가능한 채권일 경우 은행의 시가평가위원회에 서 산출한 공정가액

나.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

수익증권(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포함)은 당해 수익증권을 발행한 위탁회사가 공고. 게시하는 평가일의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 다만, 평가 당일 기준가격의 공고 게시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한 최종가격.

다. 채권과 유사한 금융상품

- ① 기업어음(CP) : 발행주체와 동일한 신용평가등급 및 잔존만기의 무보증사채 기준수익률
- ② 양도성정기예금증서(CD), 표지어음 : 발행주체에 따라 동일 신용평가등급 및 잔존만기의 금융채 기준수익률
- ③ 위 “①” 내지 “②”의 기준이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는 은행의 시가평가위원회에서 산출한 공정가액

라. 파생상품

- ① 선물거래는 당해 거래소가 발표하는 평가일의 선물정산가격. 단, 평가일 현재 선물정산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일자의 선물정산가격
- ② 옵션은 당해 거래소가 발표하는 평가일의 매매증거금 또는 이에 준하는 증거금의 기준가격. 단, 평가일 현재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일자의 기준가격
- ③ 해외선물거래의 평가에 관하여는 ‘①’ 및 ‘②’를 준용합니다.

마. 외화표시 유가증권

외화표시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상기 ‘가’의 방법을 준용하여 외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환율은 평가일의 각 외화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바. ‘가’ 내지 ‘마’ 이외의 자산 : 취득가액에 경과이자 등을 가산하여 평가

- (2) (1)의 규정에 의한 잔존만기의 반영방법 및 상이한 신용평가등급을 부여받은 채권에 대한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3) 이 신탁에서 시가평가 적용을 받지 않는 자산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규정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채권평가충당금을 적립하고 기준가격에 반영합니다.
- (4) 이 신탁에 편입된 운용자산 중 부실자산(발행자의 최종부도가 공시된 자산, 화의 및 법정관리 개시신청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자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되지 아니한 자산, 신용등급이 D등급인 채권 등)에 대하여는 부실인식시점에서 미수수익률 “0” 원으로 계상합니다.

■ 공시 및 신탁재산운용보고서의 통보

- (1) 이 신탁의 신탁기간, 신탁보수율 등을 통장 및 해당상품 안내장 등에 명시하기로 합니다.
- (2) 은행은 이 신탁의 기준가격을 창구공시 및 전자공시(www.kbstar.com)의 방법으로 매일 공시합니다.
- (3) 상품설명서를 작성하여 영업점 창구에 비치하고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교부합니다.

(4) 은행은 신탁재산운용보고서를 매년 6월말, 12월말을 기준으로 고객(다만, 상품가입시 통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고객은 제외합니다)에게 우편 등을 통하여 통보합니다.

VI. 신탁재산 운용업무의 재위탁에 관한 내용

- 신탁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은행은 약관 제18조의 운용업무를 함에 있어 제3자와 투자자문(투자일임 포함) 계약을 체결하여 신탁재산의 일정부분을 위탁운용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은행이 부담합니다.
- 위탁운용업무 대상 및 범위
 - (1) 위탁운용업무의 대상은 신탁재산 중 채권의 일정부분으로 합니다.
 - (2) 상기 '(1)'의 위탁운용범위에는 투자자문과 투자일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운용업무 위탁시 위탁사 선정 및 관리 기준
 - (1) 위탁사의 규모, 자본금, 자산운용능력, 소속 펀드매니저의 경력 및 당행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겠습니다.
 - (2) 당행은 위탁사의 운용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 관리하여 위탁운용의 성과가 부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금액 변경, 위탁계약 해지 또는 다른 위탁사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 (3) 위탁사 선정, 위탁금액 변경, 위탁계약 해지 또는 다른 위탁사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창구개시 (1개월 간)나 전자공시(www.kbstar.com)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 위탁사를 선정시까지 당행의 전문운용인력이 운용합니다.

VII. 기타 고객과 관련된 중요 사항

■ 과세

신탁운용에서 발생한 신탁이익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세금을 원천징수하며 세율이 변경된 때에는 세율변경일을 기준으로 기간배분하여 원천징수합니다.

구 분	과세시기	세율(2003.11. 현재)			비 고
		소득(법인)세	주민세	합계	
개 인	이익계산일	15%	1.5%	16.5%	
법 인		15%	-	15.0%	

■ 펀드의 해지

(1) 은행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 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중도해지 등으로 인하여 신탁금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②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 판매기간 종료후 신탁금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2) '(1)'에 따라 펀드를 해지할 때에는 이를 영업점에 1개월 동안 게시하고, 위탁자에게 개별 통지하거나 2개 이상의 주요 일간신문에 공고하기로 합니다. 통지나 공고후 1개월 이내에 거래처가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면책

- (1) 은행은 지급청구서 등에 표기된 인영(또는 서명)을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인정하고, 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가 신고한 비밀번호와 일치함을 인정하여 자금 등의 처리를 한 경우에는 거래인감(또는 서명)과 지급청구서 등의 도용, 위조·변조, 비밀번호의 누설이나 그밖의 어떠한 사고로 말미암아 거래처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2) 은행은 전산통신기기 등의 이용이나 거래정보 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은행의 책임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 누설됨으로써 거래처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3) 은행은 증서(통장), 거래인감 등의 신고 및 절차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거래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관계법령 등의 준용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신탁업감독규정 및 은행내규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KB 단기 국공채형 신탁』 약관을 참고하시거나 영업점 창구에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